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17093
등록일자	2015.9.10.
결재일자	2015.9.1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맞춤지원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노제인	김현성	조충현	유용렬	황치영	09/11 代황치영
협	주무관	이수정			
	★의회법제팀장	이창하			
조	규제개혁추진팀장	홍정진			
	기획예산과장	代김창수			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



복지환경국
복지지원과



『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』 전부개정 계획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존 『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』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

I 개정 근거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자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2015. 7.1 시행
- 법제처 「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」 관련 상위법령 반영 조례개정
 - ▶ 서울시 법무담당관-10681(2015.07.09.)호 및 기획예산과10415(2015.08.20.)호
-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:감사담당관-3249(2015.03.31.)호

II 개정 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자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『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』 개정 및 용어 재정립
- 법제처 「조례 규제 개선 과제 100선」 관련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」에 따른 상위법령 반영
- 자치법규 「부패영향평가」 관련 개선권고 이행

III 주요 내용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→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‘지역사회복지’ → ‘지역사회보장’으로 명칭 변경
- ‘지역사회복지협의체’ → ‘지역사회보장협의체’ 로 명칭 변경
- ‘지역사회복지서비스’ → ‘지역사회보장서비스’ 로 명칭 변경
- ‘상근간사’ → ‘직원’으로 명칭 변경

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(안 제2조)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

기존 폐지(제2조)	신 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 -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사항 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사항 -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 -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-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반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

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 · 신설(안 제3~5조)

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~7조

1. 대표·실무협의체 구성 인원 확대

- 대표협의체 : 10명 이상 40명 이하
- 실무협의체 : 10명 이상 40명 이하

2. 대표·실무협의체 위원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 포함 조항 신설

3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격기준 조항 신설

4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·공공부분 위원 구성 비율 조항 신설

- 2/3이상 민간부분 위원으로 구성

4.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
■ 위원장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신설(안 제8조제1항)

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·6조

■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● 「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」 결과 재정비

■ 각 협의체 회의시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2항)

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5항

■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(안 제12조)

● 「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」 결과 재정비

IV 추진 일정

■ 입 법 예 고 : 2015. 9월 (20일간)

■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10월 중

■ 구의회 제출 : 2015. 10월 중

■ 공 포 : 2015. 10월 중

V

행정사항

- ▣ 예산 조치 : 비예산
- ▣ 합 의 : 불필요

붙임 : 『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』 전부 개정조례(안) 1부